「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 함.

나.「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출연기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2) 대 표 자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3) 소 재 지 : 구미시 이계북로 7

4) 출연예정액 : 금8,000백만원

5) 출연금 사용처 :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

나.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2) 사업기간 : 2027년 ~ 보증 한도까지(자금 소진시 까지)

3) 보증규모 : 출연금의 10배수 보증(예정)

4) 지원대상 : 구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5) 지원한도

- 1인당 50백만원 이내

- 다자녀(2명이상),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70백만원 이내

6) 상환방법 : 5년 이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택일

7) 심사기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촉 여부 심사

8) 지원방법

- 시 출연금 80억원의 10배수인 800억원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

9) 지원현황

('26. 9. 23.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계	2013~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출연금(市)	18,600	2,600	1,000	미출연	1,000	2,000	2,500	5,500	4,000
출연금 (금융기관)	11,000				500		1,000	5,500	4,000
보증규모	334,000	26,000	10,000		15,000	20,000	35,000	132,000	96,000
보증금액	304,272	26,000	10,000		15,000	20,000	35,000	132,000	66,272
보증업체수	12,158	1,550	490		663	856	1,324	4,429	2,846

다. 출연 필요성

1)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2)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자금 조달 부담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18조

2)「소상공인기본법」제3조

3)「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은 시 출연금의 10배에 달하는 보증 규모를 확보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대규모 시비 출연이 수반되는 만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